

●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5-114호

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에 따라 부과된 납입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7월 21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공시송달공고

1. 제 목: 국가소송 판결액 납부고지서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가.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(납입의 고지), 제14조(독촉), 제15조(강제이행의 청구 등)
- 나.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
- 다.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25.7.21.~8.4.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(단위: 원)

대상자		납부고지 내역		
성 명	주 소	부과근거	부과금액	징수과목명
박상*	전남 순천시 우석로 **	2007가합28** 2022가단537**	200,000,000	자산매각대

5.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4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